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I.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 (안 제6조)
- 복지센터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7조)
-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 (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 2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3호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호의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센터로써의 제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1호의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은 2000. 10. 1일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12조에 복지센터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변 상책임 조항은 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서 복지센터의 운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서 상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되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